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 (제 회)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
용 편의성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항목	세부 항목	가중치	내용별 (가중치)		비 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시	읍/면	지도상 직선 거리
			3km 이상: 10	10km 이상: 10	
			2.5km 이상 3km 미만: 8	8km 이상 10km 미만: 8	
			2km 이상 2.5km 미만: 6	6km 이상 8km 미만: 6	
			1.5km 이상 2km 미만: 4	4km 이상 6km 미만: 4	
			1km 이상 1.5km 미만: 2	2km 이상 4km 미만: 2	
			0.5km 이상 1km 미만: 1	1km 이상 2km 미만: 1	
	0.5km 미만: 0	1km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시	읍/면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상가지역: 8 잡단주거지역(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읍면 소재지: 10 주거지역: 6 기타지역: 2		
다.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 정차의 편리성: 2~4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라. 사무실 위치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소유 상태	5	본인 건물: 5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바. 접근 편의성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 미설치: 1			
업무 수행 능력(50)		5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 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중 합 평가		
합 계		100			

※ 읍/면은 군 이하 및 도농(都農) 복합 형태의 읍/면(시 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함

신 · 구조문대비표

	평가하지 아니한다.
--	------------

현행	개정안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 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3. ~ 7. (생략) 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 10. (생략)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 ----- ----- -----.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9.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 ----- ----- --. 다만,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에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용 편의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8187